

대구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가단13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창현

변론 종결 2024. 8. 27.

판결 선고 2024. 10.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GV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려 한 사람이고, 원고는 'C'를 운영하며 위 차량을 매수하려 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차량 매도 경위

- 1)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D, E, F에 각 광고 글을 등록하여 놓았고, 2024. 2. 6. 12:50경 자신을 D 딜러 G이라고 소개한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매수 문의를 받았다.
- 2)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6,90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 3)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실제 거래금액은 6,900만 원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6,25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먼저 입금하여 거래 기록을 남긴 후 피고가 이를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실제 매매대금인 6,9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의 차량 매수 경위

원고는 2024. 2. 6.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원고는 차량 상태 확인 후 6,350만 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차량 매매 진행 및 매매대금 송금

- 1) 원고는 탁송회사를 통해 H 기사를 이 사건 차량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 I건물 J동 앞으로 보냈고, H 기사는 2024. 2. 6. 17:40경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차량을 검수한 후 차량사진, 차량등록증, 매도용인감 등을 받아 사진을 찍어 원고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 2) 원고는 위 사진을 확인한 후 2024. 2. 6. 18:02경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3) 피고는 2024. 2. 6. 18:11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50만 원을 이체하려 했으나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지연 이체가 신청되어 있어 곧바로 이체가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다른 계좌를 통해 금원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4. 2. 6. 18:49경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24. 2. 23. 원고에게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6,25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1,75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4,5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의 새로운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매매계약 성립여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 매매 과정에 있어 피고의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는 확정적으로 6,900만 원이었던 반면, 원고는 그 매수대금을 6,250만 원으로 알고 위 금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6,2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대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거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와 관련하여 직접 협의한 바가 전혀 없고, 각각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매매조건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을 대리할 만한 어떠한 권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 성립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거나 매매대금으로 송금된 돈을 피고에게 줄 생각 없이 일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임시 송금이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금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 역시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입금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2024. 2. 6. 18:02경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8:49경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입금과 송금에 걸린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는 점, ④ 결국 피고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공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성립하지 않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매매계약을 진행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송금한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희동